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일: 2020년 10월 20일

작성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I.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의 기본 문제

1. 일부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유지

■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존치함으로써, 법을 통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에 있어서 성·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법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조치로서, 다른 조치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낙태죄 완전 폐지 없이는 재생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도 어렵고 성평등 또한 진작되기 어려움.

■ 낙태죄를 통한 형사처벌은 이미 임신중지를 줄이는(혹은 출생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음. 또한 임신주수, 사유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실효성 없음을 달리 볼 사정은 없음. 즉, 태아의 생명 보호 및 임신중지율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활용한 것임.

2.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

■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을 둠으로써 임신초기 임신중지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여성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신중지 시점을 늦춤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음. 여성들의 낙태 남용을 우려하는 일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통념을 드러낸 것임. 임신 14주 이후의 임신중지에 대해서 사유를 요하는 것도,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도, 이미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의 임신중지 시점을 늦추고 더 위험한 임신중지를 감행하도록 만들 뿐임.

■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의 문제.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임신 24주 이후라고 해도 긴급피

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차도 개정 법률안이 임신 주수에 따라 점차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음.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을 태아의 생명보다 경시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될 위험.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 제2항의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호의 범죄행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여성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임신중지 시점을 늦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를 임신 24주 이후에야 인지하게 된 경우, 임신 24주 이후에 새롭게 생긴 경우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여성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중지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이 취약성에 대한 처벌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함. 스스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늦은 시기의 임신중지를 해야 할 만큼 양육환경의 미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 시기가 늦춰진 이유는 더 큰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추론임.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임신중단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빈곤한 상황, 가족이나 파트너의 폭력·학대·통제로 인해 임신이 자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언어 장벽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늦어진 경우 등. 취약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함.

3. 사유에 따른 제한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 제2항 1호는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중지를 허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임. 그런데 현행 성폭력 법제 등의 한계로 인해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에 1호만으로는 부족함.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이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함. 소위 스텔싱 범죄는 성행위에는 동의했으나 상대방이 콘돔에 구멍을 뚫거나 성행위 도중 콘돔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비동의간음죄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상에서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어려움도 고려되어야 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과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신고율은 매우 낮음. 성폭력 피해로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성폭력 사실 입증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임신중지 시점이 늦어지는 일도 빈번함.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증에 실패하여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 여성이 임신중지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존재함.

*이미경, 「성폭력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 12주 이내에 지원 요청한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57%)이 결국 12주가 지나야 수술이 가능했음.

■ 그 외의 사유의 경우에도 증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임신중지 시점을 늦추게 되고, 증명 과정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4. 상담과 24시간의 대기시간 의무화

■ 상담의 내용과 원칙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상담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이 모욕적인 언사를 경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음. 상담의 기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다면, 임신중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시술소를 찾는 여성들도 늘어날 것임.

■ 상담과 24시간의 대기시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과 기회를 얻기 어려운 취약한 조건에 놓인 여성들의 임신중지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

5.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임신중지 처벌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는 의사에 의하여 임신중지가 될 것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미프진 등을 구해서 스스로 임신중지하면 임신초기에 행해졌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민간요법을 통해서 임신중지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그 과정에서 여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의사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해도, 다른 임신중지 방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통념과 취약성에 대한 처벌 문제와 연결됨. 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위험한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 의사의 진료거부권, 진료거부시 연계의무를 다른 의사·병원이 아닌 상담기관으로만 규정한 것 등은 여성들이 의사를 통하지 않고 임신중지하도록 만드는 요인임. 이를 개정법률안에 남겨둌으로써 여성들이 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택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택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임.

II. 세부 조항별 의견

개정(안)	의견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1항의 현행 유지	1. 형사고소의 악용 가능성 1.1. 여성에 대한 협박·보복의 도구 ■ 낙태죄는 그동안 파트너 등에 의해 협박·보복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음.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임신한 여성과 폭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애인/전 애인, 남편/전 남편 등에 의한 고소 고발로 이루어진 것이었음. 이런 식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불평등한 상황을 감당하게 만들어왔고 이 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임. 처벌 조항이 유지되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형법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신주수 및 사유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파트너 등이 낙태죄로 협박·보복의 도구로 악용할 위험성은 상존함.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트너 등의 신고로 인해 수사·재판을 거치게 된다면 여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함. 임신중지에 대해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게 된 이후에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소송을 또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며, 임신주수 및 사유 판단의 모호함 등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인해서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님. 또한, 용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수사·재판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일정 정도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게 되고, 사회적 낙인이 부과되는 임신중지 사안의 특성상 모욕적인 언사에 노출될 위험도 있으며, 수사·재판을 거치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음. (수사는 원칙적으로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소환통지서의 발송 등의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음.) 설사 일부 성폭력 사건에서 하등 비공개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소송당사자들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마련, 정보 획득,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더해 주장·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중첩될 경우, 임신중지한 여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됨. 1.2.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의 도구 ■ 의사·의료기관에 양심을 품은 사람들이 협박·보복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낙태반대 진영이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거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임신중지하는 의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2. 의료현장 2.1. 처벌의 가능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위축 ■ 임신주수, 사유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의사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될 여지가 있음. 이는 임신주수, 사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그 자체로 여성의 합법적 임신중지의 폭을 좁히고, 때로는 여성에게 모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사유의 증빙을 요구하게 될 위험성도 있음. ■ 의사의 설명의무와 서면동의 요건 역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애인조차도 의료현장에서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받는 경향성이 생길 것임. 2.2. 임신중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의 위축
--	--

	■ 임신중지가 여전히 일부 의사들만이 제공하는 특수한 의료서비스로 여겨지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고 의미 부여된다면,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해당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3. 규범력 3.1. 임신중지에 대한 죄책감의 강요 ■ 이른바 낙태죄의 사문화 시기에도 형법상의 낙태죄는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경험을 비가시화·사사화하는 효과를 냈음. 형법에 낙태죄를 존치시킨다면, 해당 법조문의 규범력으로 인해 임신중지한 여성과 의료인은 죄책감을 강요받게 될 것임.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낙태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는 온라인 등에서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죄책감이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깊은 상흔을 남길 수도 있음을 시사함. 3.2. 임신중지 관련 지원책 활용의 어려움 ■ 설사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지원책들을 폭넓게 마련한다고 해도, 임신중지가 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사회라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임신중지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짐. 3.3.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유지·강화 ■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강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유는 크게 제약됨. 원치 않는 임신은 ‘문란한 여성’의 ‘성적 방종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적 성관계의 불가피한 결과임.
--	---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에 상당한 정도로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완벽한 피임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때로는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여성의 성적 행실을 문제 삼는 관념을 정당화함. ■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부모의 장기 기증 등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이 태아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제공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태아 생명의 소중함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임.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있다는 관념은 헌법에 위배되는 성차별적인 통념임.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	1. 위법성조각사유 ■ 해당 개정법률안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형법 제270조의2를 신설. 낙태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되, 형법 제270조의2를 통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구성요건에는 포함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라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를 활용한 방식은 주장·증명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음.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그렇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로 전환되기도 함.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성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의 부분은 증명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임. 즉, 임신중지한 여성이 추후에 낙태죄로 기소되어 법

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에 서게 된다면, 형법 제270조의2에서 규정한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임신중지였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에 해당하는 임신중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할애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음. 임신중지는 적극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제공, 이동·통역·활동보조 지원, 애프터 케어의 제공, 유급휴가 등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될 것임.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책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지원책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으면 임신중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임신중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키고 건강에 해악을 끼침. 2.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 ■ 개정법률안의 제270조의2는 임신 14주, 임신 24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배함. 임신주수를 마지막 월경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기산하는 것은 의료현장 통용되는 방식이며, 낙태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문에서도 채택함. 하지만 마지막 월경일과 착상 시점은 (월경 주기가 28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주의 차이가 남. 마지막 월경일의 경우, 월경 주기의 개인차와 불규칙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마지막 월경일을 기산점으로 명시한다면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인해 5-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월경을 하는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난 직후에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임신중지가 불가능해진다는(임신 24주 초과)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됨. 몇 가지 질환을 나열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기산 시
--	---

점을 택한다는 법문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함. 월경 주기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장애의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월경이 멈추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경험하는 매달의 출혈은 엄밀히 말해서 월경은 아니고, 미레나 등의 피임장치를 삽입한 경우 무월경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피임방법을 취했음에도 임신하게 된 경우도 포괄할 수 없음.

■ 기산 시점을 무엇으로 하든 간에 정확한 기산 자체가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됨. 임신한 날짜는 언제나 추정치이기 때문임.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수정일이나 착상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월경/성행위를 한 날짜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임신한 여성 스스로도 월경/성행위를 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함. 초음파 판독으로 태아의 크기와 발달을 관찰하여 임신 주수를 기산하는 것도 발달 속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의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일 뿐임.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과 결합될 경우, 임신주수의 모호함은 여성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됨.

■ 제안이유 등을 살펴보아도 ‘14주’ 혹은 ‘24주’라는 시점 설정에 대한 정당화가 없음.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해도, 분기점이 되는 시점의 설정에 대한 근거는 필요함. 임신중지에 관한 해외 입법례가 임신주수를 언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한이 12주, 14주, 22주, 24주 등으로 다양하고, 일부 선진국들의 임신주수 언급은 주수에 따른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형사처벌의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님.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의 임신중지 가능기한이었으므로, 해당 조문의 정당화 근거였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추측됨. 하지만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학적 가능성을 유일한 논거로 삼음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시점을 설정한 것.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라는 논리의 이면에는 보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 정보력, 의료 접근성과 양육 환경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전제가 있지만, 임신 중후기임에도 임신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란 일종의 사고실험일 뿐 출산 시점까지 임신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정에는 변동이 없음.

3. 사유에 따른 제한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는 임신 14주 초과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2항 1-4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함. 그러나 1, 2, 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나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음. 보건의학적 사유(4호)는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해도,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1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2호)는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섬. 판단 기준이나 절차 규정을 덧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1호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범죄행위의 피해자임을 증빙할 수 없거나 증빙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2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성의 진술 외에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 제2항 3호의 사회·경제적 사유는 대부분의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의 사유이기도 할 것임. 임신주수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임신중지 결정의 요인을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삼아 그 이후에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함.

■ 개정법률안 제270조의2 제2항 3호의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요건으로는 제270조의2 제2항 2문과 동조 제3항을 통해서 총 세 가지가 언급되었음. ① 임신

	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을 것(상담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② 상담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할 것 ③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를 것. 여기서 ③이 3호 사유의 확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모호함. 만약 ①, ②, ③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되는 것이라면,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됨.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상담사, 상담기관 및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그것의 부족이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신한 여성의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할 상담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자격요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부분은 애초에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해야 숙고인지 기준도 불명확함. 만약 ①, ②만으로도 3호 사유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③은 형법 조문 내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이 됨. ③이 ①, ②를 충족하면 3호 사유를 추정하기로 한 이유를 부연설명하는 역할일 뿐이라면, 제정이유를 밝힐 때 언급하는 것으로 족함. 4. 상담과 24시간의 대기시간 의무화 ■ 제270조의2 제2항 3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상담의 내용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음. 만약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임신 중지를 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지 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면, 상담사의 전문성이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역할 부여이며, 판단·평가 없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는 심리상담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됨. ■ 상담 절차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면, 임신중지를 원하
--	--

	는 여성들은 상담을 수사 과정상의 취조·심문과 다름없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므로 당초 계획했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없음. 여성이 상담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매순간 여성의 말의 진위 판단을 해야 한다면 상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명 무실해질 것임. ■ 만약 상담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만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는다면, 3호 사유를 증빙하는 것과의 관련성조차 희박한 절차를 임신중지 시점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 이전 시점에 받으라고 의무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상담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담을 받을지 여부와 상담을 받을 시점에 대한 것은 여성의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져야 함. ■ 24시간의 대기시간이 제270조의2 제2항 3호 사유의 확인이나 임신한 여성의 숙고에 도움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임신중지 시점을 늦추는 의무적 절차를 요함에 있어서는 정당화 근거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전혀 언급이 없음.
--	--